

● 제284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1. 15.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129

I. 결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우형찬 의원 외 15명 공동발의
- 나. 제안일 : 2018. 8. 29.
- 다. 회부일 : 2018. 10.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 지역 주민들은 김포공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등 기본적인 생활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김포공항은 연간 항공기 운항편수가 2005년 94,787편에서 2017년 145,507편으로 53.5%(50,720편) 급증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서울 서남권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 관련 피해 구제 및 보상, 소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및 한국공항공사에 적극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서울 특별시의회 차원의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2.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

-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¹⁾은 김포공항의 운항 편수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 서남권(양천, 강서, 구로, 금천) 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항공기 소음 관련 피해구제 및 보상, 소음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및 한국공항공사에 적극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음.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김포공항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국제선 노선이 이관되면서 국내선 전용공항으로 변경되었으나, 도심과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2003년부터 일본, 중국, 대만을 연결하는 국제선 일부 운항이 시작됨.

<표-1> 김포공항 운영실적

연도	운항(편수)	여객(명)	화물(ton)
1998	210,011	29,296,342	1,682,445
2000	233,243	36,637,067	2,197,678
2002	128,428	17,092,095	302,240
2004	105,923	14,841,953	297,267
2006	94,943	13,766,523	274,367
2008	108,015	14,264,693	203,977
2010	118,514	17,565,901	226,492
2012	130,269	19,429,224	254,563
2014	138,706	21,566,946	271,990
2015	142,863	23,163,778	271,066
2016	146,266	25,043,088	274,706
2017	145,507	25,101,147	266,427

※ 자료 : 항공정보 포털시스템

1)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근거하여 구성됨.

-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 및 여객 화물운송 실적 현황(1998년 ~ 2017년)을 살펴보면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고속철도의 운행 등의 영향으로 2006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단거리 국제선 증편과 저가항공사(LCC)의 급성장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현재 김포공항은 1일 평균 388편 운항, 68, 547명의 승객과 790톤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으며, 산술적으로 따지면 2.7분에 1대 꼴로 이착륙하고 있음.²⁾
- 이와 같이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편수 급증에 따라 서남권(양천, 강서, 구로, 금천)지역 주민의 항공기 소음 피해는 매년 가중되고 있음.
-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제7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8조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김포공항의 경우 공항시설관리자³⁾인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한 공항소음대책 사업계획수립과 소음대책사업(참고자료1), 주민지원 사업(참고자료 2)을 시행하고 있으나,
- 정부와 한국공항공사에서 항공정책기본계획⁴⁾과 공항소음방지중기계획,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소관하고 있어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피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임.

2) 한국공항공사 공항통계(<https://www.airport.co.kr/www/extra/stats/airportStats/layOut.do?menuId=397>)
 3) "공항시설관리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공항소음방지법」 제 2조제5호.)
 4) 「항공사업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수립 발표한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5년~2019년)에 따르면 수도권 항공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김포 국제공항을 비즈니스항공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고, 동북아 중소관광도시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국제선 기능 확대 추진 등을 담고 있음(참고자료3)

- 또한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인 서남권(양천, 강서, 구로, 금천)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입증자료와 법적 증거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음대책과 피해보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관련 피해 구제 및 보상, 소음방지 등 실질적인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고, 정부 및 한국공항공사에 이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환경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지원(기획경제위원회), 생활환경에 대한 각종 자료 수집과 분석(환경수자원위원회),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조(교통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어 있어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정책 방안을 토대로 서울시의회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⁵⁾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 결과

- 동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른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관련 상임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 교통위원회는 항공기 증편 운영에 따른 영업 이익은 한국공항공사에 돌아가고 있음에도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 서남권 지역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5)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 관련 보상 및 소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참고자료 5).

참고자료 1 김포공항 소음대책사업 실적 ('94~'18)

구 분			1994년~2017년 실적		2018년	
			사업량	예산(백만원)	사업량	예산(백만원)
소음 대책 사업	주택	방음시설(호)	44,239	245,155	522	700
		냉방시설(세대)	19,007	29,869	4,000	15,000
		TV수신대책(세대)	11,846	381	-	-
	학교	방음시설(개교)	42	17,557	-	-
		냉방시설(개교)	42	28,000	-	-
		냉방시설(재설치)	20	-	-	-
	공영방송수신료(세대)		55,778	5,103	65,390	2,050
	전기 요금 지원	학교(개교)	56	2,217	56	855
		일반주민(세대)	52,769	13,038	70,627	11,125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호/k㎡)		-	-	1	500
그 밖의 사업(식)			1	1,5177	1	3,630
주민지원사업(식)			1	85,836	1	12,140
합계			-	442,556		46,000

참고자료2 김포공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

○ 2017년 김포공항 주민지원사업 세부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번	행정구역	사업명	지원사업비
1	양천구	신월동 어르신복지관 건립	1,604,250
2		계남체육관 음향환경개선	281,250
3		계남공원 생태통로 보수	15,000
4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564,000
5		보안등 LED광원 교체	14,000
6		신월3동 주민센터 헬스장 시설개선	434,500
소계			2,914,000
	구로구	고척경로당	22,500
7		능골산 자락길 조명등 설치공사	150,000
8		학교 환경개선사업	430,867
9		소음피해 지역방범 CCTV	130,000
10		빛 환경개선 사업	145,633
소계			879,000

○ 「공항소음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

구분	사업종류	세부내용	지원비율
1. 주민 복지 사업	가.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양로시설, 경로당, 아동상담소, 아동복지관, 어린이집,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75/100
	나. 체육사업	체육공원 등 체육 관련 시설 또는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	75/100
	다. 교육문화사업	도서관 또는 교육·문화 관련 시설의 설치	75/100
	라. 그 밖의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5/100
2. 소득 증대 사업	가. 공동작업장 사업	공동이용을 위한 소규모 공용 창고, 구판장의 설치, 지역 대표 작물의 공동작업장 설치 또는 공동 육묘장 퇴비시설 설치	75/100
	나. 공동영농사업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 양수장, 농작물 재배시설의 설치 또는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75/100
	다. 일자리 창출 사업	취약계층, 여성, 노인 또는 청년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75/100
	라. 그 밖의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5/100

참고문헌 3 국토교통부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김포국제공항부분 발췌)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

(2015 ~ 2019)

2014. 12.

국 토 교 통 부

② 김포공항 비즈니스항공 중심공항 등 역할 확대

- 비즈니스 제트기 등 소형 항공시장 성장 지원을 위해 김포공항을 비즈니스항공 중심 공항으로 육성('15~'16)
 - 김포공항에 비즈니스 제트기 운영 시설인 비즈니스항공지원센터 (BASC, Business Aviation Service Center) 신설('15~'16)
 - * 출입국관리(C.I.Q), 급유, 조업, 정비 등 서비스 일체 제공
 - 김포공항 비즈니스 항공 활성화를 위해 김포공항 국제선 자가용 전세항공기 운항규정을 현행 19인승에서 50인승으로 완화('15)
 - * 「김포공항 국제선 자가용전세편 운영규정(국토부 훈령)」 개정
- 노후화된 여객터미널 및 부족한 주차장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개량·확충하여 여객의 편의성 제고
- 김포공항 배후단지 개발 및 공항 주변지역에 문화 시설, 비즈니스 관광 산업* 등을 유치하여 복합융합공간으로 조성
 - * 국제회의등과 관광이 결합된 복합산업(MICE, Meeting-Incentives-Convention-Events)
- 항공산업의 위상과 발전상을 제시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안전확보와 항공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김포공항내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추진
 - 항공안전훈련 및 조종사·승무원 등 항공업무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자라나는 항공꿈나무 육성

참고자료4 김포공항 현황(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14호)

구 분		시 설 규 모	수 용 능 력
활 주 로		3,600×45m 3,200×60m	22.6만회/년
계 류 장		1,215,487m ²	73대(소형항공기 미포함)
여 객 터미널	국 내	77,838m ² 88,352m ² (리모델링 후)	3,145만명/년 (3,527만명/년)
	국 제	53,090m ² 79,185m ² (시설개선 후)	430만명/년 (493만명/년)
화 물 터미널	국 내	30,363m ²	607천톤/년
	국 제	96,072m ²	826천톤/년
주 차 장		335,493m ²	9,452대
항 행 안 전 시 설		활주로14R : CAT-IIIa 활주로32L : CAT-I 활주로14L : CAT-I 활주로32R : CAT-I	시정 175m 시정 550m 시정 550m 시정 550m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관련 의견제출

■ 교통위원회 검토의견

- 동 구성 결의안은 김포공항의 연간 항공기 운항편수 급증으로 인접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정부 등에 서남권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 관련 피해 구제·보상 및 소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서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항공기 증편 운영에 따른 영업 이익은 한국공항공사에 돌아가고 있음에도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 서남권 지역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 관련 보상 및 소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한편, 동 특별위원회는 제9대 서울시의회에서 구성·의결되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운영한 바 있음